

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

1.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)

① 이 특별약관(이하 『특약』이라 합니다.)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안정화 할인 적용 대상

가. 신계약

(1)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 계약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13조(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)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하며, 보험업감독규정 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비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은 제외함, 이하 「실손의료 보험계약」이라 함)

(2)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판매하는 유병력자질병통원실손의료비(갱신형)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(보험업감독규정 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에서 정한 유병력자질병통원실손의료비(갱신형) 보장을 말함, 이하 「유병력자 질병통원실손의료비(갱신형) 보장」이라 함)

나. 갱신계약

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갱신이 도래하는 「실손의료 보험계약」

② 이 특약의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안정화 할인 적용 기간

「실손의료 보험계약」의 계약체결일(또는 갱신일)로부터 보험기간(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(태아)인 경우, 계약체결일부터 출생 후 최초 갱신도래 전)에 한하며,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)

회사는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할인이율 적용된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로 운영합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